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정용식 소유물건(2025타경5294)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법보좌관 김학상

감정평가서번호: Capital2504-1-6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apital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 남 중

김 남 중

(인)

감정평가액	사백삼십이만사천삼백이십원정(₩4,324,320.-)		
-------	------------------------------	--	--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법보좌관 김학상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정용식 (2025타경5294)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5.05.02	2025.05.01 ~ 2025.05.02
			작성일
			2025.05.06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579 579x---- 3,411 이	토지	98.28 여	44,000 백	4,324,320
합계					₩4,324,3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전	계획관리지역	579 579 ×---- 3,411	98.28	44,000	4,324,320	정용식 소유 일부
합 계								₩4,324,32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대상 물건의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리 소재 “수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전” 1필지 중 정용식 소유토지의 일부(579/3411)]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 목적을 위한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대상 물건의 개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토지									
토지	기호	지 번	면 적 (㎡)	지 목	이용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및 지 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1	수리 42	579* 579/3411	전	전, 전 기타	계획 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3,400

3. 기준시점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05.02.로함.

4. 실지조사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하여 실지조사는 2025.05.01.~02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시장가치)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임.

2. 감정평가조건

없 음

3. 그 밖의 사항

- 1)본건 토지(기호1)는 “전”으로 이용중이며, 북동측 일부는 콘크리트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준시점 현재 건축허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조회) 되므로 건축허가가 실효되었거나 건축허가 없이 콘크리트 기초공사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본건 토지의 전체 소유자는 정용식이나 평가대상은 일부(579/3411)로서 1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요인비교. 분석하여 평가액 결정 후 평가대상인 일부(579/3411) 면적을 사정하여 평가 하였음.
- 3)본건 토지 중 콘트리트 기초공사 부분 위에 아동식구조의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참고, 약 18㎡)가 있음.
- 4)본건 토지는 목측, 항공도면 및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 및 이용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 ②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본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본건 토지(기호1)의 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다른 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① 평가개요

본건(기호1)은 토지로서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음.

② 토지가액 산출근거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가) 인근 표준지 현황

(제천시 수산면)

(공시기준일 : 2025.01.0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A	수리 78-7	전	3,603	전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평 지	12,100
B	수리 79	대	759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각(가)	부정형 평 지	18,200

나) 비교 표준지 선정사유

본건(기호1)은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로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 중 본건과 제반 입지여건이 유사 하고,가격형성에 있어서 유사하고,비교성이 많은 표준지A)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비교 표준지의 선정

(제천시 수산면)

(공시기준일 : 2025.01.0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본건 토지	표준지 A	수리 78-7	전	3,603	전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평 지	12,100

나. 시 점 수 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19조(지가동향의 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지가동향 조사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비교 표준지A)가 소재하는 충북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경우 공시지가 기준일(2025.01.01)로부터 기준시점 현재(2025.05.02)까지 지가변동률은 0.337%(1.00337) 임.

기 간	지가변동률 (%)	비 고
2025.01.01. ~ 2025.05.02	0.337% (1.00337)	2025.01.01.~2025.03.31:0.211 2025.03.01.~2025.03.31:0.122 $(1+0.00211)*(1+0.00122*32/31) \approx 1.00337(0.337\%)$

※2025년 04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발표로 인하여 2025년 03월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다.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기호1)와 표준지(A)는 상호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대등시됨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개 별 요 인 비 교			본건토지/ 표준지A	비 고
조 건	항 목	세항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5	취락과의 접근성, 도로(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에서 본건토지는 표준지A 보다 다소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 지 조 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30	면적, 경사, 일부 콘크리트 기초공사 등 획지조건에서 본건토지는 표준지A 보다 우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유사함
		규제의 정도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유사함
		기타		
격차율 계			1.36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및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제천시 수산면)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단가 (원/㎡)	목적	용도 지역	비고 (이용상황 등)
거 래 사례1	수리 43-**	전	1,692	2021.04.06	30,041	매매	계획관리	세로(가)
거 래 사례2	수리 36-**외	전	3,289	2021.03.31	30,404	매매	계획관리	소로한면
거 래 사례3	수리 12-**	전	1,421	2023.11.20	21,111	매매	계획관리	세로(불)
평 가 사례1	수리 338-**	전	1,663	2024.12.05	25,000	담보	계획관리	세로(가)
평 가 사례2	수리 345-**	전	813	2021.04.14	16,000	담보	계획관리	세로(불)
평 가 사례3	수리 174-**	답	17.9	2023.08.31	52,900	지적 재조 사	계획관리	세로(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㉞ 비교 사례의 선정

본건 토지(기호1)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에 적용할 비교사례는 평가사례1을 선정하였음.

㉟ 시점수정

(충북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구 분	기 간	지가변동률 (%)	비 고
평가사례1	2024. 12. 05. ~2025. 05. 02	0.406% (1.00406)	2024. 12. 01~2024. 12. 31:0.079 2025. 01. 01~2025. 03. 31:0.211 2025. 03. 01~2025. 03. 31:0.122 (1+0.00079*27/31)*(1+0.00211)*(1+0.00122*32/31) ≒ 1.00406

※2025년 04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발표로 인하여 2025년 03월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㊱ 지역요인 비교

표준지A는 평가사례1과 상호 근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지역요인 대등시됨(1.00)

㊲ 개별요인 비교

㉠ 표준지A와 평가사례1

비 교 항 목	표준지A/ 평가사례1	비 교 요 인	비 고
접 근 조 건	1.05	농로, 인근취락 등 접근조건에서 표준지A는 평가사례1 보다 우세함	-
자 연 조 건	1.07	관개배수 등 자연조건에서 표준지A는 평가사례1 보다 우세함	-
획 지 조 건	1.15	경사 등 획지조건에서 표준지A는 평가사례1 보다 우세함	-
행 정 적 조 건	1.00	표준지A는 평가사례1과 유사함	-
기 타 조 건	1.00	표준지A는 평가사례1과 유사함	-
격 차 율 계	1.29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㉞ 격차율 산정

평가사례1 기준 표준지A 가액						
구분	사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평가사례 1	25,000	1.00	1.00406	1.00	1.292	32,431

시점수정한 공시지가 표준지A 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표준지A	12,100	1.00337			12,140

평가사례1 기준 표준지A가액과 시점수정한 공시지가 표준지A 가액의 격차율			
구분	평가사례1 기준 표준지A 가액	시점수정한 공시지가 표준지A가액	격차율
본건토지	32,431	12,140	2.67

㉟ 인근지 지가수준

용도 지역	토지 용도	가 격 수 준 (원/㎡)	비 고
계획관리지역	농경지	25,000원/㎡ ~ 45,000원/㎡	

다) 그 밖의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평가목적 등을 참작할 때 본건 토지는 2.67을 그 밖의 요인으로 상향 보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토지단가 결정

상기 제 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

산식 = 공시지가(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기 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 교 치	개별요인 비 교 치	그 밖의 요인 보 정 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본건 토지	12,100	1.00337	1.00	1.365	2.67	44,247	44,000

③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사정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본건 토지	98.28	44,000	4,324,320

※ 평가대상면적(정용식 소유 일부, 579/3411); 579㎡ * 579/3411 = 98.28㎡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① 평가개요

토지는 대상토지(기호1)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자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 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토지가액 산출근거

가. 비교 거래사례 선정

가) 인근 거래사례 현황

(제천시 수산면)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단가 (원/㎡)	목적	용도 지역	비고 (이용상황 등)
거 래 사례1	수리 43-***	전	1,692	2021.04.06	30,041	매매	계획관리	세로(가)
거 래 사례2	수리 36-***외	전	3,289	2021.03.31	30,404	매매	계획관리	소로한면
거 래 사례3	수리 12-***	전	1,421	2023.11.20	21,111	매매	계획관리	세로(불)

나) 비교 거래사례 선정사유

본건 토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중 거래사례1을 선정하였음.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 점 수정

(충북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구 분	기 간	지가변동률 (%)	비 고
거래사례1	2021.04.06~ 2025.05.02	6.193% (1.06193)	2021.04.01~2021.04.30:0.193 2021.05.01~2021.05.31:0.223 2021.06.01~2021.06.30:0.290 2021.07.01~2021.07.31:0.233 2021.08.01~2021.08.31:0.235 2021.09.01~2021.09.30:0.245 2021.10.01~2021.10.31:0.219 2021.11.01~2021.11.30:0.262 2021.12.01~2021.12.31:0.266 2022.01.01~2022.12.31:2.002 2023.01.01~2023.12.31:0.378 2024.01.01~2024.12.31:1.188 2025.01.01~2025.03.31:0.211 2025.03.01~2025.03.31:0.122 $(1+0.00193*25/30)*(1+0.00223)*(1+0.00290)*(1+0.00233)*(1+0.00235)*(1+0.00245)*(1+0.00219)*(1+0.00262)*(1+0.00266)*(1+0.02002)*(1+0.00378)*(1+0.01188)*(1+0.0211)*(1+0.00122*32/31) \approx 1.06193$

※2025년 04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발표로 인하여 2025년 03월 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기호1)와 거래사례1은 상호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 대등시됨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개 별 요 인 비 교			본건토지/ 거래사례1	비 고
조 건	항 목	세항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3	농로(도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에서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1 보다 다소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유사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 지 조 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30	경사, 면적, 일부 콘크리트 기초동사 등 획지조건에서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1 보다 우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유사함
		규제의 정도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유사함
		기타		
격차율 계			1.33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토지단가 결정

상기 제 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

산식 = 사례단가(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 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본건 토지	30,041	1.00	1.06193	1.00	1.339	42,716	43,000

③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사정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본건 토지	98.28	43,000	4,226,040

※ 평가대상면적(정용식 소유 일부, 579/3411); 579㎡*579/3411= 98.28㎡

3)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①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 고
본건 토지	4,324,320	4,226,0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 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③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사정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본건 토지	98.28	44,000	4,324,320

※평가대상면적(정용식 소유 일부, 579/3411); $579\text{㎡} \times 579/3411 = 98.28\text{㎡}$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리 소재 "수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전" 1필지)이며, 주위는 마을, 농경지,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토지는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마을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 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동측 일부에 콘크리트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북동측 콘크리트 기초공사 위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창고, 약 18㎡)이 있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전"이며, 북동측 일부에 콘크리트 기초공사항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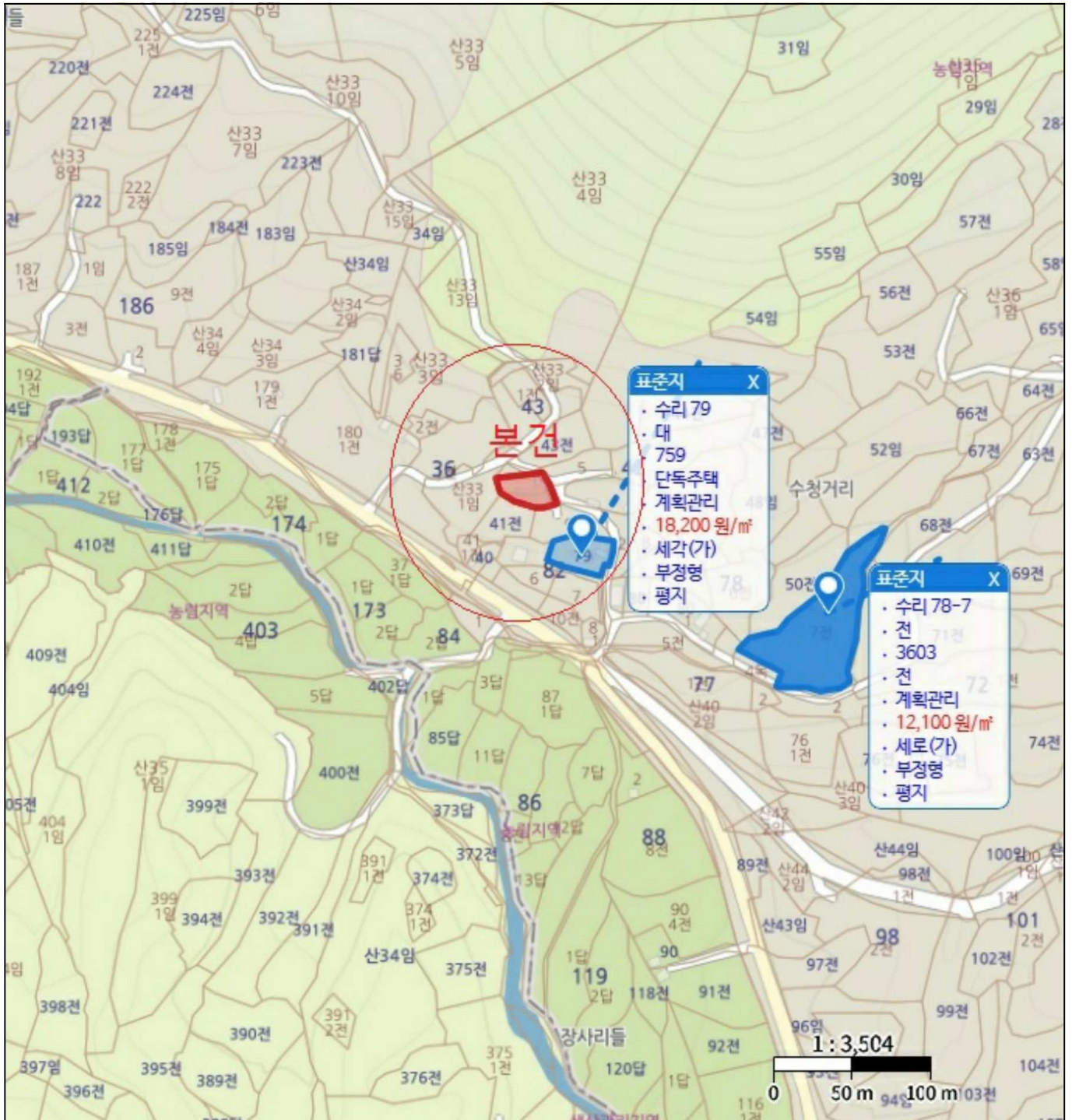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이상임.

위치도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항공도면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사 진 용 지



사 진 용 지



사 진 용 지

